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04. 3. 22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주민  
등록관련 업무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관련 전산업무 담당도 포함되며 동별 약 3명, 총 68명의 인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대상의 범위는 동별로 인구의 증감, 업무분장의 변경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3조에서 직위 포괄계약방식을 채택한 것은 인사이동시의 재가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대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적절한 방안이며 보험가입금액 최저 1억원 이상은 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소요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서 191쪽 내무행정, 동행정운영비에 1인당 80,800원 총 5,49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규정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로는 2003. 6. 7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3. 7

보고자 : 김 찬 재

## 자치구 주민등록업무 보험가입 조례제정 현황

【2005. 2. 4 현재】

연번	구 명	조례제정 형식	최저금액	보험가입방식	비 고
1	종로구	독립조례	1억원	직위포괄계약방식	
2	중 구	"	"	"	입법예고중
3	용산구	"	5천만원	"	
4	성동구	"	1억원	"	
5	광진구	"	5천만원	"	
6	동대문구	"	"	"	
7	종량구	"	"	"	
8	성북구	추진사항 없음			
9	강북구	독립조례	1억원	직위포괄계약방식	
10	도봉구	"	3천만원	"	
11	노원구	추진사항 없음			
12	은평구	"			
13	서대문구	독립조례	5천만원	직위포괄계약방식	
14	마포구	"	1억원	"	
15	양천구	"	"	"	
16	강서구	추진사항 없음			
17	구로구	통합조례	1억원	직위포괄계약방식	회계,인감, 주민등록,보상담당
18	금천구	독립조례	"	"	
19	동작구	통합조례	5천만원	"	인감, 주민등록담당
20	관악구	독립조례	1억원	"	
21	서초구	"	5천만원	"	
22	강남구	추진사항 없음			
23	송파구	통합조례	1억원	직위포괄계약방식	인감, 주민등록담당
24	강동구	"	5천만원	"	"